

#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Ⅲ)

## 제자 내용

1. 머리말
2. UR 농산물 협상과 현황
3. 최근의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4. UR협상의 타결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5. 맺는말

최 염 순  
농림수산부 축장과

## 4. UR협상의 타결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UR농산물협상은 새로운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각국들의 노력으로 보아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직접적인 수입규제로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축산업은 앞으로 값싼 외국 축산물과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해야 하므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주요 축산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협상에서 비교적 기능 즉, NTC 대상품목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다행한 일 이겠지만 만약, 비교적 기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① 현행 가트 11조 2 항(C)의 규정에 의한 국가적 생산통제를 전제로 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거나 ② 그렇지 않으면 관세화를 수용해서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가트 11조 2 항(C)을 적용하기에는 국내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 만약, 축산물이 비교역적기능(NTC)에 반영되지 못하여 위에서 밝힌 관세화나 가트 11조 2 항(C)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표9와 같다.

어떻든 우리 축산업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구조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이행기간이 어느정도 주어진다고 해도 종국

(표9) 적용가능한 대안별 장단점 비교

품 목 별		GATT 11조 2항(C) 적용시	관세상당직(TE) 수용시
쇠고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제한 유지로 국내 농가 보호</li> <li>생산통제에 의한 현수준의 사육기반 확보와 계획적인 생산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 강화</li> <li>국내산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무역수지 균형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TT/BOP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97년까지의 개방조건보다 관세화가 상대적으로 유리</li> <li>감축이행기간(10년 수준)의 확보로 구조 조정 가능</li> <li>UR 및 통상마찰 해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육규모가 대부분 부업규모(5두미만이 전체의 95%)로서 생산 Qouta배정과 가격결정이 어려워 생산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li> <li>주기적인 가격동락과 농민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제도운영 곤란</li> <li>선진국에서는 생산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수급상 부족분(50~60%수준)의 수입충당 불가피</li> <li>국내의 적용여건 미비로 신제도(법제화·기구신설·부과금 징수 등)의 실시에 따른 저항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의 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방함으로 인한 충격과 영농불안 가중 예상</li> <li>국제경쟁력이 낮아 생산위축으로 인한 사육기반 붕괴 우려</li> <li>농산물보호에 있어 상징적 품목의 개방곤란</li> <li>농가합의가 어렵고, 정치 쟁점화 불가피</li> <li>UR 분위기로 보아 아국입장 반영의 한계</li> </ul>
돼지고기 닭고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제한 유지로 국내 농가 보호</li> <li>계획생산제도(Supply Management System)의 정착으로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가소득 원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으로 관세화를 수용하는 것이 GATT/BOP 합의사항의 이행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li> <li>최소한의 구조조정기간 확보와 경쟁력 확보 이후 생산확대 가능</li> <li>수출 성장산업으로 적극적 육성 대처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의 적용조건 미비로 현실 가능성성이 불투명하고, 신제도의 실시에 따른 저항 예상</li> <li>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량 확보에 의한 생산통제가 어렵고 수입개방 없이는 현수준 이상 생산 및 수출확대 곤란</li> <li>생산통제 전담기구의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 필요</li> <li>경영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구조개선(부업 → 전업화)에 막대한 자금소요</li> <li>수입제한을 목적으로 동조항 원용에 대한 대외설득력 부족과 체약국의 반발 예상</li> <li>UR협상의 장기목표(Free Trade)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관련업계의 구조조정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방초기의 충격으로 양측 의욕 상실 우려</li> <li>시설자동화의 계열생산체계의 초기 추진 완료 시급</li> <li>협상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이행기간 최대한 확보 필요</li> <li>외국산 가공품의 선호와 가격저렴으로 수요가 급증할 경우 국내생산기반 위축</li> </ul>

에 가서는 모든 축산물을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개방할 때

에는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 관세상당액을 부과하여 자유화하고 이행기간동안 약속수준까지 점차 감축해 나가야 한다.

〈표10〉 치즈의 관세상당치 산정(예)

품 목	국내가격 ( A )	국제가격 ( B )	관세상당치(TE) (86-88평균)	
			종 량 세 (A-B)	종 가 세 (A-B/BX100)
쇠고기	4,653원/kg	1,748원/kg	2,905원/kg	168.0%
돼지고기	1,864	1,482	382	26.0
닭고기	1,489	1,053	436	42.9
치즈	7,000	1,100	5,900	541.7

가령, 예를들어 치즈를 개방한다고 하면 표10에서 산출된 관세상당치를 개방초년도에 부과하게 되는데 관세상당치가 높을수록 즉, 국내외 가격차이가 클수록 우리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축산업의 적정한 보호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축산물 생산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상당수준 감축해야 하고 수입물량은 늘어나 농가소득 유지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며, 축산 지원정책도 UR협상 결과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UR협상타결이 양축농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이미 예상하여 미리 「농어촌구조개선대책」과 「축산장기발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축산업구조 조정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물 수입관세·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이 자금 중 표11에 보듯이 재원조성의 비중에 비례한 상당수준을 축사시설개선, 축산단지 조성, 축산기계화 등 특별히 축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축산부문에 과감히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992년에는 이와같은 축산업구조조정 부문에 1,600~2,000억원 규모가 투자지원될 전망이어서 멀지않은 장래에 그 성과가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안정대의 설정운용 등을

〈표11〉 '90년도 농수산물 수입관 및 축산관련 부가세 추정수입액

구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임수산물
○농수산물 관세	3,369억 원	1,775	759	835
○부가가치세	1,917		1,917	
- 배합사료	1,893		1,893	
- 축산기자재	24		24	
합 계	5,286 (100%)	1,775 (33.6%)	2,676 (50.6%)	835 (15.8%)

통한 축산물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축산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수출유망 축산업의 육성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입증가에 따른 축산피해 구제제도와 관세제도 그리고 동물검역제도의 활용을 통해 과도한 수입을 제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어느 면에서는 UR협상목적과 배치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협상타결로 제한받기 이전에 가능한 정책수단이 동원돼서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같은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축농민과 생산자단체는 단결된 힘을 결집하여 최종 UR협상 타결을 앞두고 기울이는 정부의 UR협상노력에 대해 의견제시와 지지 그리고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야 한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양축농민은 우리 농촌을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으로 첫째, 경영혁신과 시설자동화 등에 의한 생산비 절감 둘째, 가족노동력 중심형의 전업화와 전문경영 도입실행 셋째, 가축능력 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 넷째, 기술개발에 의한 고품질 축산물생산 등을 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5. 맷는말

UR농산물협상이 올 가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

어 주요 협상국간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합의에 이르러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취약한 우리 축산업에는 여려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 협상이 계속적인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결렬된다고 해도 다자간 협상보다 힘있는 수출국과의 쟁투적인 협상이 불가피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 모두를 어렵게 될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협상타결이 우리농촌과 축산업의 설자리를 송두리채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위기감에서 벗어나 앞서 알아본 이 협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를 자문해 보고 양축농민·학계·업계·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민첩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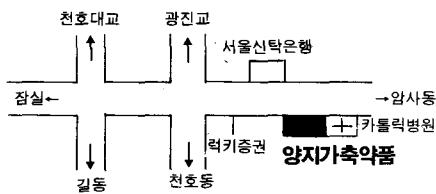
정부는 이 협상이 다른 어느 협상보다 부담이 크지만 양축농민과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 나가는데 온갖 협상노력을 다하고, 또한 양축농민은 분발하여 생산성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 개방화로 접어든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과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기필코 극복하고, 농업에서의 축산업이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아 그것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진정으로 우리 농촌을 잘 살고 희망이 넘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연재 끝)

## 동물약품 도매전문

◎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물약품 도매상 양지가축약품

◎ 같은 약이라도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상담환영 (질병상담, 판매점 개설상담)  
지방주문환영 (신속, 정확한 발송)



## 양지가축약품상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7-8  
전화 : (02) 478-2208, 477-9332  
FAX : (02) 488-8627